

연구계획 승인신청서
([]배아 []체세포복제배아 []단성생식배아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 (연구 책임자)	성명	전화번호	
	주소		
연구기관	기관명	등록번호	
	소재지		
	기관장 성명		
연구내용	연구제목		
	연구 목적		
	연구기간		
	필요 잔여난자 수	필요 잔여배아 수	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연구책임자) (서명 또는 인)

기관장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배아연구의 목적, 방법, 기간,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2.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3.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계획서	수수료 10,000원		
처리 절차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처 리 기 관 (보건복지부)	→ 검토 처 리 기 관 (보건복지부)	→ 결재 처 리 기 관 (보건복지부)	→ 승인서 발급 처 리 기 관 (보건복지부)